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06호

「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1일

### 강 룽 시 의 회 의 장

##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

#### 1. 제정이유

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,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·처리하는 화주·국제물류주선기업·해상운송기업·항만하역기업,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 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'화물', '화주', '해상운송기업',

- '항만하역기업', '국제물류주선기업'의 정의를 명시
- 지원대상(안 제3조)
- 지원 범위(안 제4조)
  -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 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
  - 옥계항을 이용하여 자동차, 건설기계,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을 취급·처리하는 화주, 해상운송기업, 항만하역기업, 국제물류주 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
  - 예·도선사 유치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지원기준 등(안 제5조)
  -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·규모·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- 지원예산 확보(안 제6조)
  -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「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
  -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강릉시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예산 확보 가능
- 지원신청 및 교부(안 제7조)
  -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,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- 지원금의 반환(안 제8조)
 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
- 지원금의 정산 등(안 제9조)
  -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
  -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 보고 생략 가능

- 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10조)
  -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·의결 위해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
  -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.
- 그 밖의 시책추진(안 제11조)
- 준용(안 제12조)
  -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강릉시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

#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
- 전화번호: 033-640-4077

- 팩스번호: 033-640-4070

- 전자우편(이메일): hellen8762@korea.kr

붙임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####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 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,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·처리하는 화주·국제물류주선기업·해상운송기업·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화물"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, 승용차, 건설기계를 말한다.
  - 2. "화주"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.
  - 3. "해상운송기업"이란 옥계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.
  - 4. "항만하역기업"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「항만운 송사업법」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.
  - 5. "국제물류주선기업"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 한다.
- 제3조(지원 대상)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옥계항을 이용하

- 여 화물을 취급·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화주
- 2. 해상운송기업
- 3. 항만하역기업
- 4. 국제물류주선기업
- 5.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
- 제4조(지원 범위)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
  - 2.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·해상운송기업·항만하역기업·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
  - 3. 제11조 및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원기준 등)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·규모·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지원예산 확보)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「강원도 무역항 국제 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

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4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신청 및 교부)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 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8조(지원금의 반환)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원금의 정산 등)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10조(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그 밖의 시책추진)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있다.

- 1. 예선·도선사 유치
- 2. 옥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
- 3.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물 수출입 증대 및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강릉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
○ 성명(단체명) :				
○ 주		소 :		
○ 연	락	처 :		

제ㆍ개정안 내용	의 견	비고